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725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법제처의 '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'에 따라 상위 법 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· 용어 수정

- 나. 불합리한 조례의 간소화 및 현행화
- 다. 여성양성평등법 취지에 부적합한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, 안 제5조)
- 나. 지진 위험도평가단 구성을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단원의 교육훈련 의무 부과사항 정비(안 제2조, 제5조, 제5조)
- 다. 여성양성평등법 취지에 부적합하게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표현한 문구 및 관련 내용 정비(안 제7조)
- 라. 소방방재청 기구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4월 9일 ~ 4월 23일(15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연재난과

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을 「지진・화산재해대책법」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학·사계 및 관련 학·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"을 "건축·토목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남시"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제5조제6항제1호 중 "「건설기술관리법」"을 "**「건설기술진흥법」**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⑧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·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제2항 후단 중 "학교와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제 3조제1항 및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"을 "학교·공공시설·병원 등 피해시설"로, "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"를 "위험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안전총괄과
입	부서장 직위·성명	안전총괄과장 최문환
안	팀장 직위·성명	안전협력팀장 전용신
자	담당 성명·전화번호	전용신 031-790-5109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	제1조(목적)
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	
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, 국	
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「지진재</u>	<u>「지진·화산재해대책</u>
<u>해대책법」</u>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	법」 제21조
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	
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"위험도평가단원"(이하 "평가단원"이	3
라 한다)은 <u>학·사계 및 관련 학·협</u>	<u>건축·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</u>
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	로 하남시
지자체 거주자 중 하남시 재난안전대	
책본부장(이하"하남시 지역본부장"이	
라 한다)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	
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	
제5조(위험도평가단 구성·운영 및 자격)	제5조(위험도평가단 구성·운영 및 자격)
①·②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건축물,	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
교량·터널, 댐·저수지, 철도, 원자력시	<u>이내로 구성한다.</u>
설, 가스·전력·통신 등 전문분야의 평	
가반장 각 1명과 반원을 포함하여 20명	
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전문가도 포함되	
도록 한다.	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1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에 의한 건축, 토	1. <u>「건설기술진홍법」</u>

현 행	개 정 안
목,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 초급	
기술자 이상	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	⑧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
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 평가	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
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	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·훈련을 지원
다만,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하남시 위험	<u>할 수 있다</u>
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	
크숍을 개최한 경우 하남시 지역본부장	
이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	
제7조(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) ① (생	제7조(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	②
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 이	<u>학</u>
경우 <u>학교와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</u>	교・공공시설・병원등 피해시설
공기질관리법」제3조제1항 및 사회적	
약자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	
<u>용시설</u>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<u>성별 특성</u>	<u>위험도</u>
<u>을 반영하여 위험도</u> 평가를 실시하여야	
한다.	
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	<u><삭 제></u>
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	
<u>수 있다.</u>	
④ ~ ⑥ (생략)	④ ∼ ⑥ (현행과 같음)